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황근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농업협동조합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중 정보 수집 필요성이 낮은 가구원 수를 기재사항에서 제외

3. 주요내용

가. 조합원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간소화(안 제5조제2항)

1) 조합원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에서 가구원수 제외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“가구원 수(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)”를 “구성원 수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가입신청) ② 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,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제1호,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(생략) 2. <u>가구원 수(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)</u> 3. ~ 7. (생략)	제5조(가입신청) ② 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,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제1호 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(생략) 2. <u>구성원 수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</u> 3. ~ 7. (생략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54